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 외 1인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김근한·김민성 의원(2인)

찬 성 자: 김낙관·김원섭·김춘남·이지연
장미경·정지원 의원(6인)

1. 제안이유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에 피소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원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소송결과 제출 및 소송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마. 소송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 2)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3)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
- 4)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 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
- 6)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나. 부서검토: 정책기획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나.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청원경찰

2. “직무 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재직 중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가.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

나.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

3. “소송비용”이란 소송(고소·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가. 착수금, 송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

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신청비용 등

다. 그 밖에 직무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비용

제3조(지원대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한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소하거나 피소된 민사소송의 결과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2.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3.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 수수, 향응 제공, 뇌물 수수, 청탁 등 비리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심급마다 (형사 고소·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각 심급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단일사건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무원 등 1명당 심급별 2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

담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하는 총 소송비용은 최대 6천만원까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소송비용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제5조(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별표의 소송비용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비용 반환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미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소송비용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3. 소송비용 반환의 감면여부 및 감면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미시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결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소송비용 반환 기준(제8조 관련)

구분	반환 기준	
	내용	금액
민사 소송	1.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부 패소한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2.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패소한 경우	패소비율 적용
형사 사건	1. 소속 공무원이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 :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2. 소속 공무원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사건	
	가.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의 50%
	나.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공통	1. 소속 직원이 승소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혹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	받은 소송비용 전액 ※ 지원범위를 초과한 금액 제외
	2. 행정종합배상공제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ex) 구미시 소송비용 지원금액 3천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 지원금액 2천만원인 경우 → 2천만원 회수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 지원범위를 초과한 금액 제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서 약 서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본인은 구미시 소속 ○○○(으)로서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청과 아울러 같은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은 소송비용 일체를 즉시 구미시에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구 미 시 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라. (생략)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 카. (생략)

2. ~ 7. (생략)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7.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정책기획과

조 례 명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소송결과 제출 및 소송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소송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현행 제도상 소송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방안 마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원활한 업무추진환경 조성○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제2항에 따른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 1인당 심급별 최대 2천만원, 총 최대 6천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 예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 관련 소송의 발생 여부 및 건수, 사건별 소요 비용이 사전에 특정되기 어려워 비용의 구체적인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 정책기획과 법무팀 임성민(☎054-480-6524)